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디지털콘텐츠의 범위에 “이용자의 몰입감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”가 포함됨을 명시함(안 제2조제5호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